

의안번호	2213129
의 퇴 인	서범수의원
회 답 일	2025.10.23.
추계번호	25B3580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 (납부독촉 및 가산금)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함(제2항)	의무규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함.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음(제3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21조 (납부독촉 및 가산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하향조정하고, 증가산금의 산정은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하되, 그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경우 가산금 수입 감소가 예상됨
-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분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건별 가산금·증가산금 부과금액, 체납일수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이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향후 예상되는 가산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최근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가산금 연체금 징수액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할 수 있음

[표 1] 개발부담금 부과현황 및 가산금 연체금 징수내역: 2022~2024년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부과금액 (부과건수)	847,139 (7,829)	607,826 (8,692)	496,616 (6,456)
징수금액 (징수건수)	413,235 (8,559)	436,755 (8,491)	467,532 (7,488)
가산금 연체금 징수액	1,398 (1,427)	2,417 (1,589)	1,887 (1,524)
증가산금 연체금 징수액	2,832 (1,153)	2,821 (1,117)	2,469 (1,110)

주: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은 당해연도 기준, 징수건수 및 징수금액은 과년도 및 당해연도에 부과하여 당해연도에 수납된 금액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